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박갑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348
----------	------

발의년월일 : 2019. 2. .

발 의 의 원 : 박갑상 의원, 강민구 의원
 김병태 의원, 김지만 의원
 박우근 의원, 이태손 의원
 장상수 의원, 황순자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나.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들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다.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바.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예산조치 필요

다. 참고자료 :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에서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상을 말한다.
3. “교통사업자”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를 설치, 운행 또는 운영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교통수단운영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운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6.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7. “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8.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교통안전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때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군의 교통안전 시책을 종합하여 조정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
2.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
3. 그 밖에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수단 운영자의 의무) 교통수단 운영자는 그가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한 운행 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 방향
2. 기타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전문가,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조(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7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
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
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제9조(교통안전점검)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또는 구성원을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 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홍보 물품 보급
3. 사업용 차량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4.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2조(협의체 구성) 시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관서,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効)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한 민·관 행사
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

3.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사업
4.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 운수종사자 지원사업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자동차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 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2. ~ 14. (생략)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교통수단안전점검) ①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통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 그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수단운영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수단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수단 운영자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교통수단 또는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장을 출입하여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교통수단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일에 검사계획을 통지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통수단에 대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안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교통수단안전점검에 필요한 대상·기준·시기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

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9. (생략)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습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고 하거나 제3항에 따라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

전면허를 취소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